

	<h2 style="margin: 0;">시간표 작성 지침</h2>		규정번호	3-3-16
			제정일자	1999.08.01
	개정일자	2019.09.01		
	개정번호	Ver.6 총페이지	2	

1. 강좌별 수강인원 기준

본 기준의 적용범위는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적용하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제외한다.

가. 전공과목

- 1) 이론강좌의 강좌별 수강인원 기준은 40명 내외로 하고 50명 초과시 분반할 수 있다.
- 2) 실험실습강좌의 경우 이론강좌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실험실습실 규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
- 3) 어학강좌(회화)는 35명 내외로 한다.

나. 교양과목

- 1) 이론강좌의 강좌별 수강인원 기준은 50~60명으로 한다. 다만 1개 교과목 수강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10개 이내의 강좌로 한다.
- 2) 어학강좌(회화)는 35명 내외로 한다.

다. 기타

- 1) 가상강좌(인터넷수업)는 단일강좌로 개설한다. 단, 200명 초과 시 분반 운영할 수 있다.
- 2)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정원을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.

2. 연속 강의 기준

강좌의 유형은 이론강좌와 실험실습강좌(이론/실험실습 혼합 강좌 포함)로 구분한다.

가. 이론강좌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연속 강의할 수 있다.

- 1) 분리 배정 시 인접한 요일로 배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(예시 : 월요일 배정 시 화요일 연속 배정할 수 없다.)
- 2) 2시간 연속 이론강좌는 다른 이론 또는 실험실습강좌와 연속강의를 할 수 없다.
- 3) 산업체위탁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을 강의하는 전임교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26>

나. 실험실습강좌의 경우 1개 강좌의 연속 강의는 인정하나, 다른 이론 또는 실험실습강좌와의 연속강의는 할 수 없다. 단, 총 2시간 범위 내에서는 다른 강좌와 연속 강의할 수 있다.

다. 산업체 겸임교원과 강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9.01>

3. 1일 수업시간 및 주당 수업일수 기준

가. 1일 수업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 이론 강좌만 강의 시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나. 강의시간은 주당 4일 이상으로 분산 편성하여야 한다. 단, 진로지도, 현장실무는 수업 일수에서 제외한다.

다. 보직교수 등 기본시간 미만 대상자는 주당 수업일수 4일 이상 규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.
 라. 산업체 겸임교원과 강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9.01>

4. 교수별 교과목 배정 기준

가. 전임교원은 학기당 2개 교과목 이상 담당한다. (현장실무는 제외) <개정 2019.09.01>

나. 전임교원은 동일 교과목의 경우 3개 강좌까지 담당할 수 있다. 단, 교양과목의 경우 4개 강좌까지 담당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9.01>

다. 적용 예외자

- 1) 보직교수 등 기본시간 미만 대상자
- 2) 산학협력중점교원, 실습교원, 강의교원, 실습전담교원 <개정 2019.09.01>

5. 기타사항

가. 주당 수업시간 중 반별로 1일 이상 1교시 수업에 배정한다. (진로지도 제외)

나. 현장실무는 학년별로 1개 강좌만 개설한다.

다. 산업체 위탁반 강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부 3교시(19시 15분)부터 편성한다.

라. 주·야간 구분 없이 0교시(08:00 시작)부터 14교시(22:30 종료)까지 수업시간을 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